



소통하는 의정
공감받는 의회

제3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(제1차 교육위원회)
2020. 4. 23.(목) 10:00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

교육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충청북도교육감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: 2020년 4월 13일

○ 회부일자: 2020년 4월 16일

3. 제안이유

-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(대통령령, 2019.8.6.)이 제정·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·근절하여 도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(안 제2조)

-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해야 하고,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함.

나. 적극행정 지원위원회(안 제3조)

-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사항을 심의함.

다. 위원장의 직무(안 제4조)

-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며,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함.

라. 위원의 신분보장(안 제5조)

-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.

마.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(안 제6조)

- 지원위원회 위원이 4개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되고,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회피하도록 함.

바. 간사(안 제7조)

- 지원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도록 함.

사. 운영세칙(안 제8조)

-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함.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, 안 제2조에서는 충청북도교육감으로 하여금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,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- 본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